

#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황유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01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
발 의 자: 황유정,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 민병주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 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 윤기섭, 윤영희, 이경숙, 이병운, 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 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 최민규, 최유희, 최재란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52명)

## 1. 제안이유

- 무연고 사망자 부고 게시를 통하여 시민 및 사별자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과 보건복지부 「장사업무안내」 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대상과 「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」 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대상이 상이하여 그 대상을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. 또한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인 ‘무연고 추모의 집’ 을 사별자가 애도할 수 있도록 봉안 시설을 개방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(안 제3조제4항)
- 나. 서울시에서 사망한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거부·기피한 무연고 사망자. 다만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1호)
- 다. 장례 지원대상자에 「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·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함(안 제6조제4호)
- 라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음(안 제8조제4항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
##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”를 “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한다.)을 5년마다 수립하며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”를 “한다.)을 5년마다 수립하며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”를 “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시행계획(이하 ”시행계획“이라 한다.)”를 “시행계획”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망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”을 “다음”

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제1호~제3호”를 “제1호부터 제4호까지”로, “인정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1. 시 내에서 사망한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·기피한 무연고 사망자. 다만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.
2. 사망 시,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
3. 사망 시,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「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·동장·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
4. 「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·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

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

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④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6조 제1호 및 제2호”를 “제6조제1호, 제2호 및 제4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6조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”를 “제6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”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 략)</li> <li>2. “연고자”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.</li> <li>3. “저소득층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.</li> </ol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&lt;신 설&gt;</p> <p>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 장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.)을 5년마다 수립하며, 「장사 등에 관한 법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----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----- -----.</li> <li>3. ----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----- ----- -----.</li> </ol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④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며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</p>

를」 제5조에 따른 서울시 장사시설  
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  
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 
을 포함한다.

1. 2. (생략)

3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  
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  
안

4. ~ 7. (생략)

③ (생략)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시장은 제4조  
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 
보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 
한다.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대상자) 시장은 사망시 시에  
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  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  
원할 수 있다.

1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 
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

제5조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 
의2-----  
-----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-----  
-----  
----- 시행계획-----  
-----.

제6조(지원대상자) ----- 다음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시 내에서 사망한 「장사 등에 관  
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 
사망자 및 「장사 등에 관한 법  
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  
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·기피한 무  
연고 사망자. 다만, 「의료급여  
법」 제3조제1항 및 「국민기초생  
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관
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자

3. 「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·동장·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

<신 설>

4. 제1호~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8조(지원내용) ① ~ ③ (생략)

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.

2. 사망 시,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

3. 사망 시,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「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·동장·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

4. 「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·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-----  
인정하는 -----  
-----

제8조(지원내용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

<신 설>

④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.

제9조(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) ①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.

② 제6조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.

④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.

⑤ ----- 제2항-----  
-----.

제9조(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) ① 제6조 제1호, 제2호 및 제4호-----  
-----.

② 제6조 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